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의 특징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포괄범위

성재민*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이 시작되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외환위기 직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나 대량실업이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장시간 근로의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형식상의 40시간제로의 이행을 넘어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까지 이어졌는지를 비롯한 예상가능한 효과에 대해 자료에 기초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Study; 이하 KLIPS)는 40시간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근로시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제7차년도 조사인 2004년에 ‘근로시간과 여가’를 주제로 한 부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부가조사에서는 기존 설문지에서 조사하던 주당근로시간 외에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결정 방식, 출퇴근 시간, 작업준비와 정리시간, 휴식시간, 토요일 근무형태, 평일·토요일·일요일의 시간배분, 토요일휴무 결정시기, 공휴일과 휴가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가와 관련해서는 여가시 활동내역, 누구와 함께 지냈는지, 경비는 얼마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조사될 제8차년도 조사를 비롯하여 앞으로 지속될 조사에서도 40시간제로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 설문 안에서 일자리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 그로 인해 실근로시간도 줄어들었는지, 임금이나 근로시간 관리는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패널연구에서는 앞으로 2회에 걸쳐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아직까지 KLIPS에서 조사된 근로시간이 분석된 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시간 통계와 비교해 살펴보면서 자료의 특징을 평가하는 작업을 선행하도록 하겠다. 그런 후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근로자들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자료의 질과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KLIPS팀 책임연구원(seongjm@kli.re.kr).

포괄범위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을 전제로 하여 다음 호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I. KLIPS에서 나타난 근로시간의 특징

KLIPS에서는 근로시간을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설문항목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질문하고,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했는지를 묻는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정규근로시간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근로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일주일 평균 몇 시간이나 되는지를 추가로 질문한다. <표 1>은 KLIPS에서 보고된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요약하고 있다. 1998년 53.1시간에서 2004년 50.2시간에 이르기까지 매년 조금씩 줄어왔다.

<표 1>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명)

| | KLIPS | | | 매월노동 통계조사 | 경제활동 인구조사 |
|------|-------------------|-------|-----------------------|--------------|--------------|
| | 주당 평균근로 시간(전체) | 표본수 | 주당 평균근로 시간(10인 이상) | | |
| 1998 | 53.1 (17.9) | 3,975 | 53.7 | 45.9 | 42.7 |
| 1999 | 52.8 (16.7) | 3,951 | 53.6 | 47.9 | 42.6 |
| 2000 | 52.5 (16.1) | 3,715 | 53.7 | 47.5 | 41.6 |
| 2001 | 51.3 (16.1) | 3,783 | 51.8 | 47.0 | 41.6 |
| 2002 | 51.1 (15.2) | 3,956 | 51.6 | 46.2 | 41.5 |
| 2003 | 50.9 (15.8) | 4,188 | 51.7 | 45.9 | 43.2 |
| 2004 | 50.2 (15.3) | 4,237 | 50.4 | 45.7 | 42.4 |

주: ()안은 표준오차. 『매월노동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모두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매월노동통계조사』는 2003년까지는 KLI 노동통계(2004년), 2004년은 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인용.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원자료에서 계산하였음.

비교를 위해 매월노동통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시간 통계도 <표 1>에서 정리하였다.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시계열이 10인 이상 사업체로 연결되는 관계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KLIPS도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통계치를 비교하면 세 조사간에 근로시간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KLIPS와 매월노동통계

조사는 1998년 같은 경우 약 8시간 가까이 차이가 났고, 2004년에도 5시간 가량의 차이가 있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시간 통계는 매월노동통계조사와는 약 3시간 남짓, KLIPS와는 무려 약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세 조사간의 근로시간 불일치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조사방식이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매월노동통계조사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 전체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쳐서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합계로 조사하기 때문에 편의(bias)가 개입될 개연성이 높고, 사업주 응답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과소 응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만 조사하고 있는 점도 KLIPS 조사와의 차이의 원인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2년까지는 지난 주의 근로시간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¹⁾ 단지 한 문항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측정오차의 가능성이 여러 문항으로 조사할 때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인 이상 사업체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볼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KLIPS와의 격차는 불과 2~3시간 남짓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테면 199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8.9시간이었던데 반해, KLIPS는 53.1시간이었고, 2000년에는 각각 50.0시간과 52.5시간, 2004년에는 48.0시간과 50.2시간이었다.²⁾

KLIPS의 10인 이상 통계치는 전체 통계에 비해 다소간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업체 규모 변수에 결측치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사업체 규모 결측치를 모두 제외하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계산해 볼 경우 2004년 51.1시간으로 제외하지 않을 때보다 0.9시간 증가해 10인 이상 통계치에 비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보면, 조사방법상의 특징으로 볼 때, 개별 근로자가 직접 자신이 일한 근로시간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수의 문항을 통해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KLIPS의 근로시간이 좀더 실제에 가까운 근로시간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근로자 응답이므로 약간 과대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체 규모별로 나누어 볼 경우 KLIPS의 사업체 규모는 결측치가 많으므로, 이로 인한 편의를 감안하여 절대적 수치보다는 다른 규모와의 비교 목적에서만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2003년부터 주업의 근로시간과 부업의 근로시간을 설문지상에서 명시적으로 나누어 질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2)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근거로 볼 경우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비해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은 연도에 따라 무려 주당 작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 적게 일했다는 것이다. 이는 과도하게 큰 차이로 보인다. 일례로 매월노동통계의 2004년 통계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월간 199.2시간,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198.3시간 일해 미미한 차이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큰 차이로 측정오차의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인구집단별로 나누어 KLIPS에서 조사된 근로시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표 2>는 종사상 지위별로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를 요약하고 있다. 상용직은 1998년 주당 54.4시간으로 임시직(48.7시간)에 비해서는 5.7시간, 일용직(46.6시간)에 비해서는 7.8시간 더 오래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용직에 비해 임시직이, 임시직에 비해 상용직이 더 오래 일하는 패턴은 2004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상용직(51.9시간)은 임시직(45.3시간)에 비해 6.6시간, 일용직(43.2시간)에 비해서는 8.7시간 더 일해 1998년보다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간 근로시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사업체 규모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요약하고 있다. 100~299인 규모 사업체들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이 10인 미만, 10~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의 순으로 근로시간이 길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순서는 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2004년까지 거의 유지되어 왔다. 2004년 7월 1일부터 1,0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시간

<표 2>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
| 1998 | 54.4 (16.3) | 48.7 (22.6) | 46.6 (21.9) |
| 1999 | 55.2 (14.7) | 47.9 (20.1) | 44.2 (19.5) |
| 2000 | 54.4 (14.6) | 47.0 (19.4) | 45.1 (18.3) |
| 2001 | 52.8 (14.5) | 48.4 (20.5) | 43.1 (19.4) |
| 2002 | 52.8 (13.8) | 47.3 (18.5) | 42.9 (17.5) |
| 2003 | 52.8 (14.1) | 44.2 (19.7) | 43.4 (19.0) |
| 2004 | 51.9 (13.3) | 45.3 (21.0) | 43.2 (18.0) |

주 : ()안은 표준오차. 결측치 및 잘못 응답된 값은 삭제.

<표 3> 사업체 규모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 시간)

| | 10인 미만 | 10~99인 | 100~299인 | 300~999인 | 1,000인 이상 |
|------|-------------|-------------|-------------|-------------|-------------|
| 1998 | 55.7 (19.5) | 54.3 (16.7) | 57.2 (16.6) | 53.7 (14.1) | 50.8 (14.4) |
| 1999 | 53.4 (18.0) | 54.9 (15.1) | 57.0 (15.5) | 53.9 (12.6) | 50.8 (16.1) |
| 2000 | 52.9 (18.5) | 54.8 (14.5) | 55.3 (14.1) | 53.5 (13.3) | 51.5 (14.3) |
| 2001 | 52.1 (18.6) | 53.0 (15.0) | 53.9 (13.3) | 52.4 (14.0) | 48.9 (14.8) |
| 2002 | 53.3 (16.4) | 52.6 (14.3) | 54.0 (13.9) | 52.2 (13.2) | 49.3 (14.2) |
| 2003 | 52.3 (17.6) | 52.6 (14.8) | 54.8 (14.5) | 51.6 (13.4) | 50.1 (14.4) |
| 2004 | 53.0 (16.9) | 52.2 (13.7) | 52.7 (14.1) | 50.0 (12.7) | 48.1 (13.5) |

주 : ()안은 표준오차. 사업체 규모에서 결측치 삭제.

단축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서 2004년으로 가면서 1,000인 이상 사업체가 특별히 더 많이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1시간 줄어든 100~299인과 유사하게 2시간 정도가 줄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뚜렷한 변동이 없는 한 원인으로 KLIPS의 조사기간이 5~9월에 걸쳐 있는 관계로 근로시간이 아직 단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게 된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변화한 사람들이 적었던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생산직 > 사무직 > 전문관리직 순이었으며, 이러한 순서는 시간의 변화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1998년 조사시작 이후 줄어들고 있는데, 근로시간 감소의 폭은 사무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사무직이 많은 금융 및 부동산업이 가장 근로시간이 짧고 서비스직이 많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가장 길었다. 금융, 공공서비스업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표 4〉 직종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 | 전문관리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생산직 |
|------|-------------|-------------|-------------|-------------|
| 1998 | 49.4 (16.3) | 52.6 (15.1) | 57.8 (20.1) | 54.4 (18.8) |
| 1999 | 48.4 (14.9) | 51.2 (11.5) | 57.2 (19.0) | 54.3 (17.3) |
| 2000 | 48.3 (13.4) | 50.7 (11.8) | 55.9 (19.6) | 54.3 (16.9) |
| 2001 | 47.4 (14.1) | 49.9 (12.3) | 53.1 (20.4) | 53.4 (16.4) |
| 2002 | 46.9 (14.0) | 49.8 (10.5) | 54.1 (17.2) | 53.0 (16.0) |
| 2003 | 47.4 (14.5) | 48.3 (10.5) | 55.3 (18.4) | 52.7 (16.6) |
| 2004 | 46.8 (13.8) | 47.2 (9.0) | 54.2 (17.2) | 52.4 (16.6) |

주 : ()안은 표준오차. 결측치 삭제.

〈표 5〉 산업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 | 광공업 | 건설업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운수통신업 | 금융 및 부동산업 | 공공 서비스업 |
|------|-------------|-------------|-------------|-------------|-------------|-------------|
| 1998 | 53.1 (14.5) | 53.3 (21.7) | 56.3 (18.7) | 58.8 (19.4) | 47.2 (14.4) | 51.7 (18.4) |
| 1999 | 54.3 (13.1) | 51.7 (17.5) | 57.2 (18.1) | 58.3 (15.2) | 47.6 (14.0) | 49.4 (16.7) |
| 2000 | 53.6 (12.2) | 51.8 (17.0) | 55.6 (18.2) | 59.1 (17.6) | 48.3 (12.6) | 49.5 (15.7) |
| 2001 | 53.2 (13.3) | 50.2 (16.6) | 52.5 (18.0) | 56.4 (15.0) | 48.0 (13.6) | 49.1 (16.5) |
| 2002 | 53.6 (12.1) | 49.0 (14.5) | 54.5 (16.5) | 56.0 (15.7) | 46.2 (12.1) | 49.0 (15.3) |
| 2003 | 52.9 (12.4) | 48.8 (14.9) | 54.3 (16.9) | 55.2 (15.4) | 47.1 (10.7) | 48.7 (17.1) |
| 2004 | 51.9 (11.3) | 47.6 (15.7) | 52.9 (15.4) | 54.8 (15.8) | 45.9 (10.1) | 48.8 (16.3) |

주 : 1) ()안은 표준오차.

2) 관측치가 적은 농림어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대상이었지만, 2003년과 비교해 2004년에 별다른 특징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전체 산업을 놓고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별 영향이 없는 듯 보이지만, 조사시점의 문제로 인해 단축되기 전 이미 조사가 부분적으로 완료되어 제대로 그 영향이 포착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Ⅲ. 근로시간 단축의 포괄범위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되면서 토요일근무형태를 변경하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토요일휴무제가 실시되었는지 안다고 응답한 514명 중 2001년부터라고 응답한 사람은 13명에 불과했지만, 2002년은 60명, 2003년은 136명, 2004년은 28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³⁾ 이와 같이 본격적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이 시작된 2004년 7월 1일 이전이라도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체들에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포함하여 포괄범위를 분석하겠다.⁴⁾

먼저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은 17.9%, 임시직은 9.1%, 일용직은 1.2%가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⁵⁾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매우 적은 비율만이 근로시간 단축의 수혜를 받았는데, 일용직 같은 경우는 건설업 일용직 노동시장의 특성상 토요일 휴무제가 적용되기 힘든 특성도 고려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시직과 일용직은 2004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분포해 있다는 점, 원래부터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이 상용직에 비해 낮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짧았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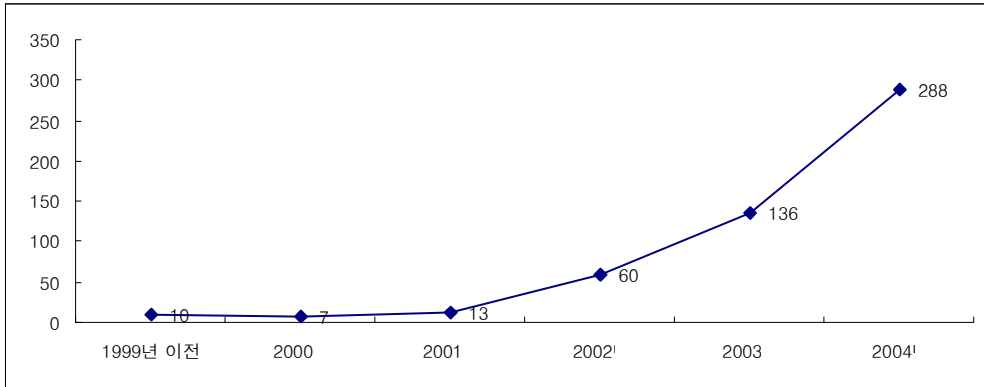
3) 부가조사 문3-3에 대한 응답.

4) 2004년 7월 1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의 포괄범위를 보기에는 조사시점이 5-9월에 걸쳐 있었던 사정상 분석대상자수가 적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사실상 이 점을 고려하여 부가조사에서는 2004년에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문21을 통해 2002년 1월 이후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5) 상용직 17.9%와 같은 절대적인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조사된 어떤 사람의 근로시간이 7월에 단축되었더라도 실제 조사는 5월에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은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단축된 적이 없다고 응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만큼 포괄하게 되었다는 성과의 지표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종사상 지위와의 비교의 목적, 즉 상대적인 크기의 의미로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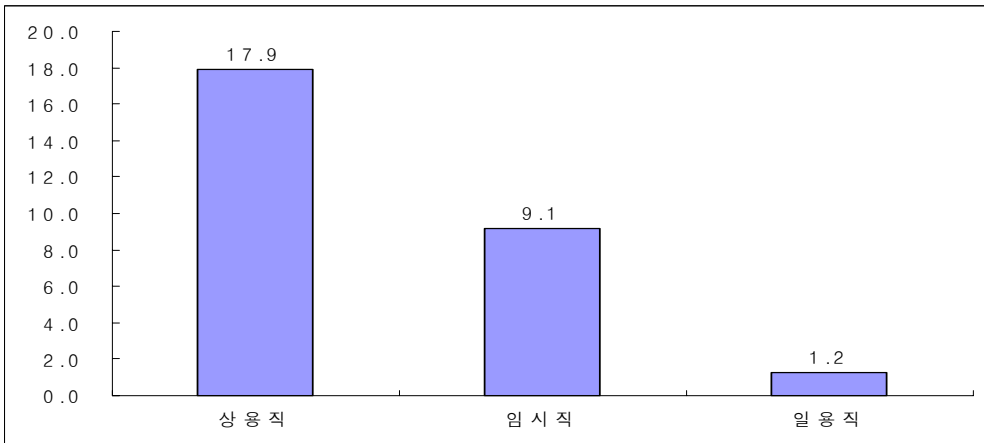
[그림 1] 토요일휴무제를 실시 시기별 인원수 추이

(단위 : 명)



[그림 2]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

(단위 : %)



6) 이러한 상황을 짐작하게 해주는 통계로는 아래의 표가 있다. 정규근무시간이 변화하지 않은 사람 중 상용직으로 지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비중은 13.9%인데 반해 임시직은 26.9%가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고, 일용직은 18.8%가 근무하지 않았다.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 단축여부별 토요일 근무 안한 사람들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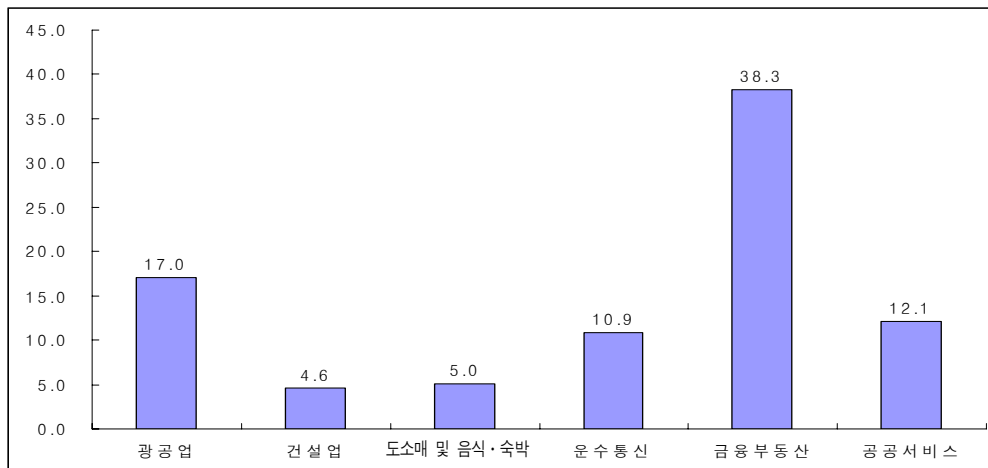
(단위 : %)

|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
| 정규근로시간 단축되었다 | 53.0 | 69.8 | 50.0 |
| 정규근로시간 변화 없다 | 13.9 | 26.9 | 18.8 |

업종별로는 금융부동산업의 정규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이 38.3%로 가장 높았고, 광공업이 17.0%, 공공서비스업이 12.1% 순이었다.7) 은행과 공공부문에 주 5일제 근무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 1,0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가 아무래도 제조업에 많을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는 반대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나 건설업의 근로시간 단축 수혜를 본 근로자 비율이 낮은 것은 1,00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의 비중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그림 3] 업종별 정규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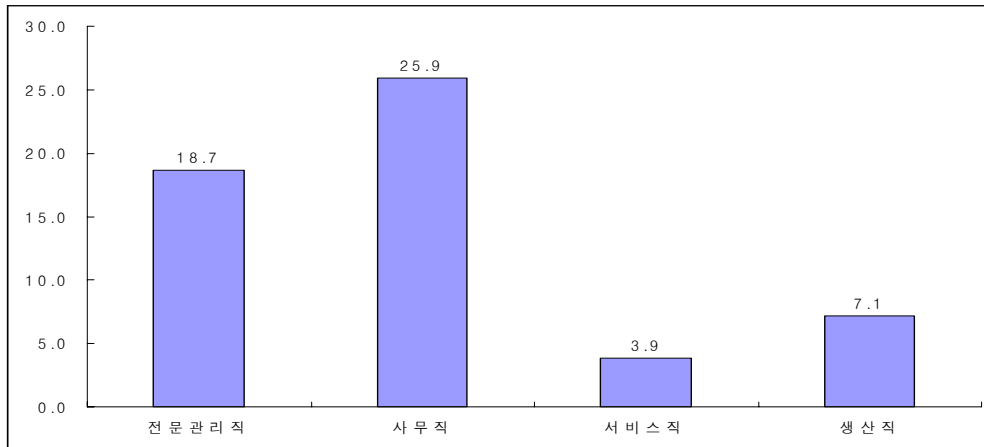
직종별로는 사무직의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이 25.9%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관리직이 15.7%, 생산직이 7.1%, 서비스직이 5.9% 순이었다. 사무직이 가장 높은 이유는 업종별 근로시간 단축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무직이 많이 분포해 있는 금융보험업이나 공공서비스업의 근로시간 단축 도입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직종별 도입률을 사업체 규모별로 세분해 보아도 여전히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이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에 비해 더 많이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즉, 단순히 1,000인 미만 사업체에 생산직, 서비스직이 많기 때문에 도입률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표 3>에서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을 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각각 39.8%, 41.0%가 근로시간 단축이 된 반면, 서비스직, 생산직은 각각 17.6%, 20.6%만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7) 앞서와 같은 이유로 금융부동산업 33% 같은 절대적인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이 수치는 다른 산업과 비교의 목적, 즉 상대적인 크기의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업종뿐 아니라 본 장의 모든 수치는 이 점을 유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그림 4] 직종별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

(단위: %)



[표 3] 사업체 규모를 통제하고 본 직종별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들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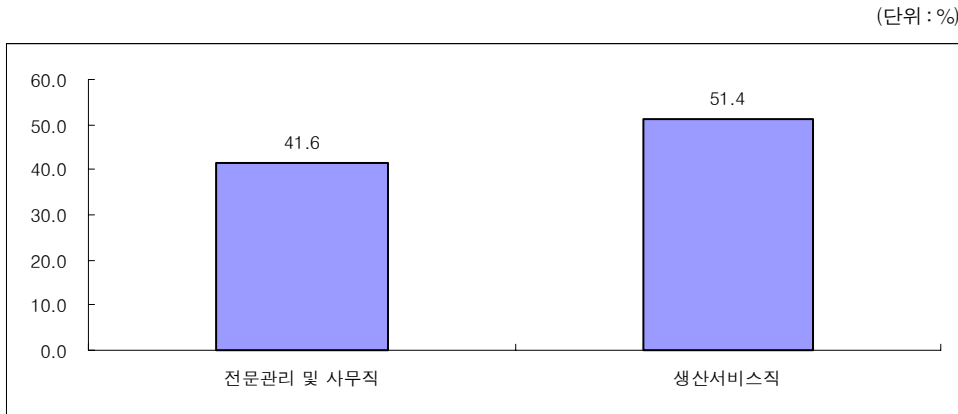
(단위: %)

| | 100인 미만 | 100~299인 | 300~999인 | 1,000인 이상 |
|-------|---------|----------|----------|-----------|
| 전문관리직 | 12.9 | 19.4 | 27.7 | 39.8 |
| 사무직 | 14.0 | 23.4 | 26.8 | 41.0 |
| 서비스직 | 1.2 | 0.0 | 18.8 | 17.6 |
| 생산직 | 2.3 | 10.8 | 20.3 | 20.6 |

한편, 서비스직이나 생산직은 정규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토요일에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보다 사업체에 나와 일해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 단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데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를 보면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은 41.6%가 토요일에 나와 근무한 반면, 서비스직과 생산직은 51.4%가 토요일에 나와 일해야 했다. 토요일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0시간 일했다고 가정하고 토요일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토요일에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이 2.8시간, 생산 및 서비스직은 3.9시간 나와서 일해야 했고, 단축 안된 사람은 각각 5.9시간과 8.4시간 일해야 했다.

이와 같이 서비스직이나 생산직의 경우, 같은 사업체 규모 안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되는 경우가 적고, 단축되었다 할지라도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에 비해 나와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때,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이 사회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게 하기 위해 노사정의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전문관리 및 사무직과 생산서비스직의 토요일근무형태 변화한 사람 중 토요일날 일하는 사람의 비중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되면서 토요일휴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체의 수가 급증해 왔다. 근로시간 단축은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 공공서비스, 광공업에서 많이 도입된 반면, 도소매, 건설업의 도입률은 미미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주로 상용직에서, 직종별로는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에 도입되었다. 생산직과 서비스직에서는 도입이 부진하였다. 직종별, 종사상 지위별 차이의 원인은 좀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도입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KLIPS에서 조사된 근로시간의 특징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포괄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약 2시간 남짓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감안한다면 패널조사의 근로시간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포괄범위를 분석한 결과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산업별로는 금융 및 부동산, 광공업, 공공서비스, 직종별로는 전문관리직, 사무직의 근로시간 단축된 사람의 비중이 다른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단계적 확대를 감안하더라도 서비스직, 생산직처럼 근로시간의 혜택을 불균등하게

받고 있는 집단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이 사회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게 하기 위해 노사정의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nd